

수입 명세서

귀속연도				
1. 공익단체 인적 사항	① 단 체 명		② 대 표 자	
	③ 고유번호		④ 전화번호	
	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		⑥ 핸드 폰	
	⑦ 지 정 일		⑧ 소 재 지	

2. 수입명세

(단위 : 원)

⑨ 회 비		⑩ 후 원 금		⑪ 보조금 · 지원금		⑫ 기타수입 (수익사업 등)	⑬ 이월금	⑭ 차입금	⑮ 총 계
개인	법인 등	개인	법인 등	국가 · 지자체	다른 공익 법인등				

3. 수입(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제외) 중 개인의 회비·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(%): (%)

4. 통장 보유 현황

⑯ 구 분					
⑰ 계좌번호					
⑱ 계좌명의자					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공익단체 (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- 이 서식은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⑦ 지정일란: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.
- 수입(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) 중 개인의 회비·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(%):란: 공익단체의 ⑮ 총계금액에서 ⑪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⑬ 이월금 ⑭ 차입금 수입을 뺀 금액 중 개인으로부터 받은 회비·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.
- ⑯ 구분란: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.